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191

발의연월일: 2025. 1. 2.

발 의 자:김성원·박충권·김선교

임이자 · 김종민 · 김소희

송석준 • 고동진 • 박성훈

이인선 · 김태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고,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는 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승객이 항공권 발권 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항공권에 포함되 어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 및 소멸시효, 소멸시효가 도과한 출국 납부금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귀속 근거,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등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마련하여 출국납부금 제 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3호 중 "출국납부금"을 "출국납부금 및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귀속되는 출국납부금"으로 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조의2(출국납부금의 환급 청구 등) ① 출국 전 제2조제3항에 따라 출국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공항운영자 (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납부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은 출국이 예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, 공항운영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출국납부금을 기금에 귀속하여야 한다.
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항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출국납부금을 기금에 귀속시키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 - ④ 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 가진 자 에게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

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 제목 중 "부과·징수"를 "부과·징수 및 환급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부과·징수의 업무"를 "부과·징수의 업무, 제2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출국납부금의 환급·환급 사전 통지 업무"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부과·징수의 업무"를 각각 "부과·징수의업무, 출국납부금의 환급·환급 사전 통지 업무"로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과태료) ① 공항운영자가 제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금의 설치 및 재원) ①	제2조(기금의 설치 및 재원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	②
(財源)으로 조성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	3 <u>출국납부금 및</u>
	제2조의2제2항에 따라 귀속되
	는 출국납부금
4. • 5. (생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2조의2(출국납부금의 환급 청
	<u>구 등) ① 출국 전 제2조제3항</u>
	에 따라 출국납부금을 납부하
	였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자는
	해당 공항운영자(「항공사업
	법」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
	운영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
	게 납부한 출국납부금에 대하
	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출국납부금
	환급청구권은 출국이 예정된
	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
	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

제12조(납부금 <u>부과·징수</u> 업무의 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<u>부과·징수의 업무</u>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 며, 공항운영자는 소멸시효가

 완성된 출국납부금을 기금에

 귀속하여야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항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소멸시 효가 완성된 출국납부금을 기 금에 귀속시키지 아니하면 국 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.

④ 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 · 징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·징수 환급 사전 통지 업무-----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<u><신</u> 설>

(2) -----

-----부과·징수 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의 업무, 출국납부금의 환급・

부과·징수의 업무, 출국납부금 의 환급 · 환급 사전 통지 업무

제13조의2(과태료) ① 공항운영자 가 제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출 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・ 징수한다.